

디지털 재사용 둘러싸고 법정시비 벌이는 미 작가와 출판사

미 항소법원, 디지털 재사용에 대해 작가 권리 인정... 신문업계는 즉각 항소

신문사의 기사 데이터베이스나 백과사전 CD롬에 저작자의 동의 없이 기사가 실렸다면 저작권 침해 사례라는 판결이 최근 미국에서 나왔다. 이번 판결은 아직까지 단행본 출판사와 큰 관련은 없지만, 전자출판이 활발해지면서 계약서에 디지털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지난 9월 24일, 전미작가조합 조너선 태시니 대표 외 9명이 《뉴욕타임즈》《뉴즈데이》《타임위너》《메드데이터》 등 미국 유수의 신문출판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제2순회구 연방항소법원은 만장일치로 기존 저작권을 디지털로 재사용할 때 작가들의 권리를 인정, 인쇄매체의 저작물을 작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디지털화하는 출판업체의 관행에 썩기를 박았다. 이날 판결의 직접적인 효과는 정기간행물과 신문에 국한되지만, 차후 백과사전 류의 참고서적의 온라인화와 데이터베이스 작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미 저작권 이용료가 지불된 인쇄매체의 기사나 원고를 다시 디지털화할 경우, 저작자의 동의와 아울러 저작권료를 다시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판결 적용시 천문학적인 배상액 예상

태시니 외 9명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1994년. 그때까지만 해도 각 업체는 발행한 인쇄물을 온라인화하거나 CD롬 등의 매체로 디지털화할 경우 지은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용해 왔다. 이 소송에 대해 1997년 제1심법정은 지은이 동의 없이 인쇄매체의 디지털 버전을 제작할 권리가

‘개정판’ 인가, ‘새로운 저작물’ 인가? 기존 출판물의 디지털화를 둘러싸고 현재 미국에서는 논란의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뉴욕타임즈》 홈 페이지



신문출판업자에 있다고 판정한 바 있다. 태시니 등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이날 제1심법정의 판결을 뒤집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판결이 나온 직후, 프리랜서와 작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미작가조합은 뉴욕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쏟아질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 신문출판업자들은 필자들과 계약을 체결할 것을 종용했다. 태시니는 저작권료 지불액수의 전체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면서도 “상당한 액수가 될 것”이라며 “소송이 처음 제기된 이후, 인터넷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했으므로 그 여파는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단체인 작가조합의 케이 머레이 고문과 미국 언론작가협회의 새무엘 그린가드 회장 역시 “상식적이면서도 단호한 판결”이라며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전미작가조합은 이번 판결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출판저작권관리소(Publication Rights Clearinghouse)를 설치했으며, 필자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발빠르게 나섰다. 전미작가조합의 변호사인 팻치 펠크와 에밀리 베이스는 “제1심법정이 할 일은 이제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한 배상액을 결정하는 일만 남았다”며 아울러 “하루빨리 신문출판업체들의 무단 사용을 금하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판저작권관리소는 이 법적 절차 이전에 배상절차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곳이다.

한편 《뉴욕타임즈》를 포함한 공동피고인 측

대리인은 10월 18일, 뉴욕 맨하탄의 제2순회구 연방항소법원에 제심청구를 제출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따라 연방항소법원 21명의 재판관 모두가 이번 판결을 재검토하게 됐다. 대리인은 “법원이 이미 출간된 문헌의 개정이란 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며 “직접적인 침해사례보다 인지하기 힘든 침해사례에 더 치중하는 우를 범했다”고 밝혔다. 이 제심청구의 핵심은 인쇄문헌의 디지털 재사용이 《뉴욕타임즈》 등의 주장처럼 ‘개정(revision)’ 이냐, 아니면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처럼 새로운 저작물로 ‘광범위하게 추정(sweeping assumption)’ 되는냐는 점이다.

디지털 재사용에 대한 이용권리 명시 필요

디지털 재사용과 관련한 미국의 이번 판결은 신문기사나 참고자료의 데이터베이스나 온라인 자료를 출판자료의 연장선상이 아닌, 새로운 출판물로 본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94년 저작권심의위원회에서 발간한 자료 《전자출판과 저작권》에 신문잡지사의 기사가 쓴 기사나 기고된 기사 모두 원저작권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만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실린 바 있다. 따라서 기존 출판물의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에 원칙적으로 원저작자의 승인을 얻는 일이 절실하다.

— 김연수 기자